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송옥주·홍기원·백승아

윤준병 • 이재관 • 문진석

민병덕 • 이원택 • 박지원

정준호 · 한정애 · 박 정

이수진 • 한민수 • 이병진

역태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임.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에 관 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보건소와 마찬가 지로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
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	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u> 따른다.</u>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